

개정법률 소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5.17.] [안전행정부령 제6호, 2013.4.16.,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 중 단란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업 등의 영업장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을 부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제18조제1항 관련)<개정 2013.4.16>[시행일:2013.10.17] 별표 1 제3호가목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것
-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구분	내용
가. 대상	<p>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점검자의 자격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를 점검자로 한다.
다. 점검 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한다.
라. 점검 횟수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점검 시기	1)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그 밖의 점검대상: 연중 실시한다.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구분	내용
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점검자의 자격	1)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로 둘 수 있다.
다. 점검 방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라. 점검 횟수	1) 연 1회 이상(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p>마. 점검 시기</p>	<p>1)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2)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p>
-----------------	---

◇ **종합정밀점검 추가대상 다중이용업**

1. 근거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2.23] [대통령령 제24257호, 2012.12.27, 일부개정]
2.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 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p>제2조(다중이용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u>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u>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u>노래연습장업</u>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u>산후조리업</u> 7의2. <u>고시원업</u>[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u>안마시술소</u>
